

# 서울특별시 양재 R&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LG,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개의 R&D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한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AI 특화기업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앵커시설로서 양재 R&D 혁신허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
- 나. 최근 양재 R&D 혁신허브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민간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,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대상시설

- 한국교총회관(6층, 500 $m^2$ ) / 서초구 태봉로 114 소재
- 하이브랜드빌딩(12,13층, 2,958 $m^2$ ) / 서초구 매현로 16 소재
- 민간빌딩(전층, 2,972 $m^2$ ) / 서초구 매현로 8길 소재
- 품질시험소 별관(1,423 $m^2$ ) / 서초구 태봉로 108 소재

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1년 ('19.7.~'20.6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계약 (카이스트-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)
- 주요 위탁사무
  - 양재 R&D 혁신허브 내 입주기업 모집
  - AI 컬리지 운영을 통한 AI 전문인재 양성
  - 컨설팅, 투자연계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AI 특화기업 성장지원
  - 세미나·포럼 개최 등을 통한 기업·인재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
  - 혁신허브 시설 관리·운영(유지보수, 시설대여, 청소용역 등)

## 다. 수의계약 사유

- 기존 위탁사무와 내용은 동일하고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되는 사안으로,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'20년 6월까지는 기존 수탁기관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·재정적 효율성 도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
-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5조 및 제18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민간위탁금 활용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거점성장추진반 양재·SETEC팀 이윤정 (☎2133 - 8476)